

제286회 정례회
성 북 구 의 회

의안
번호 제416호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
일괄정비를 위한 조례(안) 검토보고서



행정기획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(안) 검 토 보 고 서

행정기획위원회

전문위원 이 병 곤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: 제 416 호
-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- 제 출 일 : 2021. 11. 10.
- 회 부 일 : 2021. 11. 17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안이 2022. 1.13. 시행됨에 따라,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「지방자치법」을 인용하는 17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」의 개정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평가의 시기 및 평가서의 제출) ①	제25조(평가의 시기 및 평가서의 제출) ①
3.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 예산 단위사업: 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제1항	3.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제1항 ¹⁾

1) 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에 따라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 ²⁾

3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5호 ³⁾ -----

4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-----공사에 대한 감독 (감리) 업무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⁴⁾ -----

2) 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.

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.

3)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4)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5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-----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 ⁵⁾ -----

6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8조, 제29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에 따라	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 ⁶⁾ -----

7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 및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⁷⁾ --

5)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6) 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7) 제129조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8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4조 및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61조 ⁸⁾ ----- -- -----

9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」의 개정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⁹⁾ -----

10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설립기관의 범위) ① ----- -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1.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에 따	제2조(설립기관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1.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¹⁰⁾ --

8) 제161조(공공시설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9) 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10) 제102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② 시·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11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-----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-----
제11조(보건소 등의 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,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제8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.	제11조(보건소 등의 설치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6조와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,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, 제10조----- -----.

1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의 위치를 규정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1항 11 ----- -----

13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」의 개정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에 따라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 12 --

- 11) 제9조(사무소의 소재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·면·동의 사무소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이 경우 면·동은 행정면·행정동(行政洞)을 말한다.
- 12) 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--- 중략 ---

14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----운영에 관한 사항과 「지방자치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-----	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2조 13 ----- -

15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」의 개정

현행	개정안
제4조(주민투표의 대상) 1.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동 구역변경과 폐치·분합	제4조(주민투표의 대상) 1.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4항 14 ----- -----

16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통·반 설치 조례」의 개정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- -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5항 15 ----- --

13) 제12조(사무처리의 기본원칙)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4) 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(이하 “행정동”이라 한다)·리(이하 “행정리”라 한다)를 따로 둘 수 있다.

15) 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17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 조례」의 개정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종류 및 비치) ② 각급 행정기관은 다음의 구 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. 3.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1항 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----	제2조(종류 및 비치) ② ----- -----. 3.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1 <u>항16)</u> ----- -----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 : 해당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21. 9. 30. ~ 2021. 10. 20. (20일간)
- 마. 비용추계 등 자료 작성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5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안이 2022. 1.13. 시행됨에 따라, 우리 구 자치법규에서 「지방자치법」을 인용하는 17개의 조례를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의 조문으로 단순히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음.

16)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